

호주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제

이 세 경 ▶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I. 논의의 배경

II. 감염병 관리 관련 법제 개관

III. 연방(Commonwealth of Australia)의 감염병 관리 법제

1. National Health Security Act 2007
2. Quarantine Act 1908

IV. 주(State) 및 준주(Territory)의 감염병 관리 법제

1. 주의 감염병 관리 법제
2. 준주의 감염병 관리 법제

V. 감염병 관리체계

VI. 맺는 말

‘글로벌(Glocal)’은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의 합성어로서, 교통, 통신수단 등의 발달로 생활권의 글로벌화되어 경제문제를 비롯한 환경문제, 평화문제등에서는 국가간 상호의존이 높아지면서도 국가를 대신하는 단위로서의 지역의 역할이 여전히 강조됨을 의미합니다. 이에 최신외국법제정보는 글로벌과 로컬의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고자 합니다.

I. 논의의 배경

2000년 이후 한국은 다양한 감염병¹⁾의 위협을 경험하고 있다. 급성호흡기바이러스 감염병인 신종플루나 메르스는 두고라도, 만성호흡기세균감염병인 결핵으로 인한 사망이 연간 2,000명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²⁾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끼친 구제역과 조류독감 또한 감염병이다. 간암과 자궁경부암의 큰 원인으로 밝혀진 HBV, HCV 감염³⁾이나 HPV감염⁴⁾도 지속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HIV감염도 사회적 환경과 관련하여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감염병은 단순히 개인의 질병 부담을 가중시키는 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중보건과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서⁵⁾ 국가와 사회 및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더 나아가 다양한 인권을 제약하는 상황을 야기하기도 한다. 또한 국제간 교류와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서 관심과 관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⁶⁾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감염병 관리의 방향과 지향점 그리고 현재의 문제점을 살펴 보기 위해 외국의 경우를 비교 검토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의 경우 삼면이 바다이고 북쪽으로 대륙과 접해있기는 하지만 북한을 통한 육로의 이동이 사실상 차단된 상태라는 자연환경의 관점에서, 사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있고 해양과 항공을 통한 국제간 이동이 주된 이동의 경로인 호주의 감염병 관리를 살펴보는 것은 다양한 실제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염병 관리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 1) 호주의 경우 감염병(Infectious Disease), 전염병(Communicable Disease)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고, 대체로 전염병(Communicable Disease)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한국의 법률에서 제시된 감염병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일원화하여 사용하고, 특별히 전염의 개념이 강조되는 경우에만 전염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 2) 질병관리본부, 결핵환자신고현황연보 2014, 46-49면.
- 3) HBV(Hepatitis B Virus), HCV (Hepatitis C Virus): 만성 감염으로의 진행 시 간암(HCC: Hepatocellular carcinoma)의 유발인자가 된다. 한국의 HBV 감염은 drug abuse나 homosexual intercourse가 주요 감염경로가 되는 미국과는 달리 모체로부터의 수직감염이 주요 경로였다. HCV는 수혈도 빈도가 높은 감염경로이다.
- 4) HPV(Human Papilloma Virus): 여성의 자궁경부암(cervical cancer)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2016년부터 현재 만 12세가 되는 여아에 한하여(2016년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대상으로 시행 첫해에 한하여 중학교 1학년까지 대상범위를 정함)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으로 3차례의 접종 중 2차례를 지원한다.
-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나. 사회재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 6) IHR(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2005.

호주는 지난 100여 년간 감염병의 관리에 있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⁷⁾ 또한 호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중요한 국가자원으로 인식하고, 자연과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적 요소들을 비교적 엄격하게 잘 관리하여 오고 있는 국가로서 호주의 검역 및 감염병 관리 법률과 감염병 관리의 기본적인 골격을 짧게나마 개관해봄으로써 한국의 감염병 관리와 입법의 방향을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I. 감염병 관리 관련 법제 개관

호주의 정식명칭은 Commonwealth of Australia로서 연방제 국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연방의 구성은 뉴사우스웨일스(NSW), 빅토리아(VIC), 퀸즐랜드(QLD),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A),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A), 태즈메이니아(TAS)의 6개 주(State)와 노던(NT), 오스트레일리아 수도(ACT), 저비스 베이(JBT)의 3개 준주(Territory)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연방형태의 국가구조로 인하여 전염병관리(communicable disease control)를 포함하는 호주의 국가보건체계는 호주 연방정부(Australia Government)와, State 및 Territory 행정부(government)의 고유한 입법권과 권한의 틀 속에서 작동되고 있다. 호주 연방정부가 감염병 관리활동의 예산을 지원하기는 하지만, 1차적으로 지방정부(State and Territory)가 자신들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의 발견과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호주 연방정부 수준의 검역 및 감염병은 법률상 National Health Security Act 2007, National Health Act 1953, Quarantine Act 1908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으며,⁸⁾ 이러한 입법적인 기반위에서 호주 연방정부는 외국으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의 위험과 국가보건의 위기상황(national health emergency)을 관리하는 책임을 갖는다.

호주 연방정부는 1901년 출범 이후부터 검역(quarantine)⁹⁾을 제외한 공중보건과 관련된 사안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러한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따라

7) 1907년에서 2009년까지의 호주 내 모든 사망원인 중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이 약 1/10(13%>1.3%)로 감소되었다.

8) 본 연구는 인간 감염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물의 감염병 관리와 관련해서는 Quarantine Act 1908 및 Exotic Disease of Animals Act 1991, Animal Research Act 1985, Stock Disease Act 1923을 참조.

9) Quarantine Act 1908은 인간검역에 대한 책임을 호주 연방정부에 부담시키고 있다.

서 전염병과 관련된 공중보건의 관리는 주가 그 책임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감염병의 속도나 범위와 관련하여, 지역범위 내에서 통제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의 발생가능성으로 인해 점점 중앙정부의 전략적인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¹⁰⁾

6개 주와 3개 준주의 공중보건 법제는 의료인, 병원, 진단검사기관이 신고대상 질병을 해당 주나 준주의 전염병국(Communicable Diseases Unit)에 보고하도록(reporting)하고 있고, 신고사항은 주와 준주 차원에서 취합 및 전산 처리되어 익명화(de-identified)된 상태로 호주 연방보건부(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로 통보된다. 이 자료가 국가차원의 감염병 관리를 위해 국가 신고질병 표본감시체계(National Notifiable Diseases Surveillance System: NNDSS)를 통하여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주는 국가의 권한과 의사결정의 우선권을 확보하면서 지방정부들 간의 다양한 감염병 관리 실제의 불일치¹¹⁾와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국가 감염병 관리 체계(National Framework for Communicable Disease Control)’를 호주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감염병 관리의 근간으로 검토하였다. 따라서 우선 호주 연방정부의 감염병 관련 연방법률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다음, 각 주와 준주의 법률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호주의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Ⅲ. 연방(Commonwealth of Australia)의 감염병 관리 법제

호주의 연방정부차원에서의 감염병 관리는 앞서의 언급처럼 National Health Security Act 2007, National Health Act 1953, Quarantine Act 1908 라는 법률에 따른다. 이 중 National Health Security Act 2007가 전반적인 감염병 관리의 틀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총 4장(Parts)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Quarantine Act 1908과 함께 호주 연방정부의 감염병 관리의 기본이 되는 법률이다.

10)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National Framework for Communicable Disease Control, 5면.

11) 상호 호환되지 않는 데이터 처리체계와 상이한 검사방법 및 법률상의 차이 등.

National Health Act 1953은 7개의 장(Part)¹²⁾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감염병 관리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는 것은 아니나,¹³⁾ 호주의 Health Service와 관련된 다양한 조항들 가운데 예방접종과 관련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까닭으로 감염병 관리의 관련 법률로서 언급되고 있다. 특이한 것은 HPV의 예방이 Part II. 9BA The National HPV Vaccination Program Register 이라는 조항으로 9B Provision of vaccine 조항과 별도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Quarantine Act 1908는 12개의 장(Parts)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검역에 관한 권한과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한국 검역법과의 차이는 사람의 검역뿐 아니라 동식물 및 물류의 검역이 법률의 내용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¹⁴⁾

1. National Health Security Act 2007

이 법은 Part 1. Preliminary, Part 2. Public health surveillance, Part 3. Regulation of security-sensitive biological agents, Part 4. Miscellaneous의 4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감염병 관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 및 준주의 권한으로서 개별 입법을 통하여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연방의 법률인 이 법은 주로 감염병의 국가적인 표본감시(surveillance)¹⁵⁾와 관련된 내용 및 호주정부와 지방정부들 간의 협조와 관련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제2장 공중보건의 표본감시’에는 이외에도 이 법의 목적과 관련하여 다루어지는 정보의 보호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¹⁶⁾ ‘제3장 안보위협 생물학적 물질에 관한 규정’에서는 주로 생물학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생물체들에(security-sensitive biological agents: SSBA) 관한 규정으로 이의 감시와 조치의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12) Part I. Preliminary, Part II. National health services, Part III. Continence Aids Payment Scheme, Part VII. Pharmaceutical benefits, Part VIIA. Reviews by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Part, VII. Committees of Inquiry, Part IX. Miscellaneous.

13) 따라서 별도로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14) Quarantine Act 1908이 인간과 동식물검역 및 물류검역을 모두 포괄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관리의 집행 시 사람 검역은 Department of Health에서, 동식물 등의 검역은 호주 Department of Agriculture 산하 AQIS(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검역 질환의 발병이 의심되는 경우는 Department of Agriculture의 Biosecurity officer에게 우선 신고하도록 항공기나 선박의 장에게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http://www.health.gov.au/internet/main/publishing.nsf/Content/ohp-quarantine.htm> 참조.

15) Division 2—National Health Security Agreement.
Division 5—National Notifiable Disease List.

16) Division 8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2. Quarantine Act 1908

호주의 각 주정부의 입법 예를 보면, 연방정부에 앞서 각각의 식민지역에서 검역문제를 다루었고, 따라서 New South Wales에서는 1832년, Victoria는 1865년 검역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식민지 검역관련 법률은 영국의 검역법 1825(Quarantine Act 1825)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따라서 호주는 초기에 주정부의 권한으로 검역의 관리가 이루어졌다. 1918년~1919년 인플루엔자 대유행(pandemic influenza)을 계기로 1920년 연방의회가 검역법 1908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주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검역권한을 확립하였다.¹⁷⁾

이후 호주의 검역은 Quarantine Act 1908¹⁸⁾, Quarantine Regulation 2000, Quarantine Proclamation 1998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자국민과 자국의 자연생태계를 외부인과 외부의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되었다.

첫째, 주와 준주의 연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호주에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공중보건 및 의료와 같은 영역은 주와 준주 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입법 및 행정에 있어 연방 정부의 구속에서 자유로우나, 검역은 호주헌법 제5장 제51조 (ix)항10)에 근거하여, 주정부(준주를 포함) 및 연방정부의 협약(Agreement)에 따라 검역법 1908에 의해 집행된다. 즉, 호주의 검역은 연방정부와 주, 지역의 법률이 서로 독립적이지만 상호보완적으로 시행된다. 예를 들면, 검역의 단계를 입국 전(pre-border), 입국(border), 입국 후(post-border)의 3단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이들 각각 모두에 연방정부의 법률이 권한을 갖기는 하지만, 입국단계에서의 공항 위생 상태에 대한 관리 및 입국 후 검역질환자의 의료관리에 대해 주정부가 그 권한과 법적인 책임을 갖는다. 다만 연방 정부에 의해 파견된 검역당국과 주 정부의 검역당국 간의 위계가 존재하고, 이러한 영역에서도 비상공중보건사태 발생 시에는 연방 정부 검역 당국의 지시에 따르게 된다.

17) 박인경·김소윤·이세경, “통합적 검역체계 구축을 위한 법정정책 측면에서의 호주검역법연구”, 한국의료법학회지 제19권 제1호 (2011), 164면.

18) 전게서, 166면. 호주 헌법 제51조 (ix)에 기초하여 총 7개 장(Part), 총 87개 조로 구성되어 있는 호주 검역법은 제1장에서 제3장까지는 통칙으로서 개관(Introductory), 행정(Administration), 일반 조항(General provision)을 다루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 각칙으로서 선박, 인, 물건의 검역(Quarantine of vessels, persons and goods), 동물, 식물의 검역(Quarantine of animals and plants), 검역비용(Expenses of quarantine)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둘째, 연방정부 내에서도 여러 관련법들이 검역과정에 관여하게 된다. 세관이나 이민 국도 검역과 관련하여 검역질환 혹은 감염성질환이 의심되거나 증상을 보이는 입국자들에 대한 보고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민법이나 세관법도 검역과 관련되어 있다. 즉 호주의 검역법 1908은 운송수단 및 사람에 대한 검역은 물론 동물 및 식물에 대한 검역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고 입국 과정에서 관련되는 이민법이나 세관법 등 여러 관련법이 검역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

셋째, 호주의 인간 검역은 법률단계에서는 검역법 1908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면에서는 다양한 가이드라인(guideline)을 통하여 그 업무가 수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 Guidelines for Airline & Aircraft Operators Arriving in Australia(version 1.2), Guide to Completing the Quarantine Pre-Arrival Report(Pratique) Form for Vessel Clearance 등을 통하여 각 검역대상관련자들이 올바른 보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IV. 주(State) 및 준주(Territory)의 감염병 관리 법제

호주의 각 주와 준주는 앞서 언급한 바처럼 각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입법권에 따라 감염병 관리와 관련된 법률들을 입법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별적 검토를 위해, 각 지방정부별로 해당 법률을 한국 감염병 관리 법률의 발전방향을 고려한다는 비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해본다.

1. 주의 감염병 관리 법제

호주 각 주의 감염병 관련 법률은 대개 공중보건법의 개념으로 입법되었다. 따라서 그 명칭들도 대개 Public Health Act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주들마다 법에 담겨있는 감염병 관리에 관한 조항의 범위와 내용이 해당 주의 문화와 역사 및 연방정부 관련법의 수용정도에 따라 다양하고 차이가 있어 일괄적으로 비교 검토하기는 힘들다.¹⁹⁾ 따라서 우선 각 주의 법률을 법률명에 따라 연대기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9) 따라서 법률의 검토 분량에 많은 편차가 있을 수 있다.

Western Australia 주의 Health Act 1911²⁰⁾는 의료, 하수 및 위생, 주거, 모자보건, 감염병, 결핵, 성매개 질환 등 건강 및 보건과 관련된 내용 전반을 다루는 대단히 광범위한 법률이다. 특히 제9장 Part IX. Infectious diseases, 제10장 Part X. Tuberculosis, 제11장 Part XI. Venereal diseases and disorders affecting the generative organs이 주로 감염과 관련된 조항들이다.

호주의 개별 주들이 법률을 통하여 다루는 감염병 관리의 내용이 대부분 상이하기는 하지만, Western Australia 주의 Health Act 1911은 감염의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실제적으로 한국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과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을 혼합하여 놓은 형태를 이루고 있고, 절차적으로는 인신보호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인신구속과 관련된 내용들까지 포함되어 있다. 제9장 Part IX Infectious diseases에서는 각 지역 정부가 감염과 관련하여 개별입법 할 수 있는 내용²¹⁾, 소독명령 등의 보건당국의 권한, 감염병 통제 과정에서 처분되거나 손상된 물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이동 및 거주에 대한 제한과 입원명령과 관련된 규정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한센병 및 결핵관련 조항, 예방접종과 HIV나 AIDS에 관한 신고규정도 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감염병환자의 업무정지와 관련된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10장 Part X Tuberculosis은 6개 조항(Section 290~296)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에 따른 시행령(Regulation)으로 결핵을 관리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른 다양한 지침과 규정들이 행정부인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를 통하여 결핵관리의 목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제294조에서 결핵환자의 강제입원규정을 다루고 있는데, 타인에 대한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 사람(같은 조 (1)(a)(i)), 전향의 상태로 결핵에 감염되어 증상이 있으며, 알코올이나 마약에 중독된 상태를 요건으로 어느 경우나 비자발적인 환자(같은 조 (1)(b)(ii))에 대하여 보건부의 장관의 명령을 서면으로 하여 환자를

20) Part I. Preliminary, Part II. Administration, Part III Financial, Part IV. Sanitary provisions Part V. Dwellings, Part VI. Public buildings, Part VII. Nuisances and offensive trades, Part VIIA. Drugs, medicines, disinfectants, therapeutic substances and pesticides, Part VIIIA. Analytical services, Part IX. Infectious diseases, Part IXA. Prevention and alleviation of certain non-infectious disease processes, and physical or functional abnormalities, Part X. Tuberculosis, Part XI. Venereal diseases and disorders affecting the generative organs, Part XII. Hospitals, XIIA. Community health centres, etc., Part XIII. Child health and preventive medicine, Part XIII A. Maternal Mortality Committee, Part XIII B. Perinatal and Infant Mortality Committee, Part XIII C. Anaesthetic Mortality Committee, Part XIV. Regulations and local laws, Part XV. Miscellaneous provisions.

21) 249. Local laws to prevent spread of infectious disease.

치료를 위하여 입원시킬 수 있다. 자발적인 환자라도 다른 환자에게 유해한 행동을 하거나 탈원(脫院)을 시도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억류할(restraint)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앞의 입원 조항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보건부장관은 제294조 (5)에 따른 명령의 집행(application for an order)을 관할치안법원(the Magistrates Court)에 절차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법률 조항의 요건에 합당한 경우 해당 환자를 지정환자로(declared patient) 선고하여(adjudge) 병원에 입원할 것을 판결하고,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입원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체의 구속에 상응하는 격리와 관련된 강제 조항들의 법 적용은 법원의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일반적인 감염성질환자의 관리와 관련된 조항들은 제4장(Part IX) 제248조~제289조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제263조에서 별도로 입원관련 규정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제11장 Part XI Venereal diseases and disorders affecting the generative organs은 성매개성 질환의 관리를 다루는데, 그 신고와 검사의 절차 및 치료의 절차적 과정을 규정하고 있다. 앞의 다른 장과 마찬가지로 강제규정들에 대한 위반의 벌칙이 제시되어 있다.

Tasmania 주의 Public Health Act 1997은 모두 8개 장²²⁾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3장인 PART 3 Prevention and control of disease에서 감염병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신고대상 질병에 대한 의무조항과 감염병(Division 1 Notifiable diseases and notifiable contaminants 51. Transmitting disease)의 확산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통제권한의 부여와 같은 절차적인 규정들이 담겨져 있다. 태즈마니아 주에서의 구체적인 감염병 관리는 태즈마니아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지침(guideline)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Guidelines for the Control of Legionella in Regulated Systems’의 예와 같이 이 법의 위임을 받은 태즈마니아의 이러한 감염병에 따른 개별 지침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시행된다.

Queensland 주의 Public Health Act 2005는 총 12부(Chapters)²³⁾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의 제2부 제1장 Chapter 2 Environmental health, Part 1 Public health risks에서는 인간의 건강

22) PART 1 Preliminary, PART 2 Administration, PART 3 Prevention and control of disease (Division 1 Notifiable diseases and notifiable contaminants), PART 4 Tobacco products PART 5 Premises, PART 6 Water, PART 7 Registers, PART 8 Miscellaneous.

23) Chapter 1 Preliminary, Chapter 2 Environmental health, Chapter 3 Notifiable conditions, Chapter 4 Infection control for health care facilities, Chapter 5 Child health, Chapter 5A Performance of cosmetic procedures on children, Chapter 6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Chapter 7 Public health inquiries, Chapter 8 Public health emergencies, Chapter 9 Monitoring and enforcement.

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적 요소를 포함한 감염가능성(transmission of an infectious condition to humans)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관리의 내용의 근거가 되는 전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 정부와 지역 간의 권한과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3부에서는 신고해야 할 상황들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감염병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인간의 건강이나 공중보건에 위해가 될 만한 모든 내용들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4부에서는 의료감염에 관한 내용의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고 의료감염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항들이 실려 있다. 제6부인 Chapter 6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에서는 공중보건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보건 책임자(chief executives)의 판단에 따라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개별정보의 공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⁴⁾ 제 8부인 Chapter 8 Public health emergencies에서는 이 법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 상황의 발령 시 타법²⁵⁾이 이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⁶⁾

Victoria 주의 Public Health and Wellbeing Act 2008는 12장으로²⁷⁾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제8장인 PART 8 Management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Micro-organisms and Medical Conditions에 감염병의 관리와 관련된 10개의 Division 조항들이 있다. Division 1 Principles applying to the management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에서는 감염병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4 개 원칙을 법률상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침해로서²⁸⁾ 감염병의 확산이 방지되고 최소화되어야 한다. 둘째, 감염의 위험에 처한 경우 이를 회피

24) 228L Disclosur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in the public interest. 그 직전 조항에서는 정보의 공개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공공의 이익에 근거한 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는 228K Disclosure under Act or with written consent etc.의 예외를 인정 하는 것이다.

25) Examples of other Acts,

• Fire and Emergency Services Act 1990 • Public Safety Preservation Act 1986.

26) 316 Relationship to other Acts.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27) PART 1. PRELIMINARY, PART 2. OBJECTIVE, PRINCIPLES AND APPLICATION, PART 3. ADMINISTRATION, PART 4. CONSULTATIVE COUNCILS, PART 5. GENERAL POWERS, PART 6. REGULATORY PROVISIONS ADMINISTERED BY COUNCILS, PART 7. REGULATORY PROVISIONS ADMINISTERED BY THE SECRETARY, PART 8. MANAGEMENT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MICRO-ORGANISMS AND MEDICAL CONDITIONS, PART 9. AUTHORISED OFFICERS, PART 10. PROTECTION AND ENFORCEMENT PROVISIONS, PART 11. GENERAL PROVISIONS, PART 12. MISCELLANEOUS.

28) 111 Principles (a) ...the minimum restriction on the rights of any person; 일본이 2007년 개정 입법한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에서도 인권을 고려한 '最小限度の措置'를 감염병 관리 법률의 이념으로 법에 직접 명시하고 있다.

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사전예방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감염병 환자나 의심자는 그 감염병의 내용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의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사전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타인의 감염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넷째, 감염의 위험에 처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감염과 적절한 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고, 이러한 치료에 대해 접근 가능해야 한다. Division 2 Examination and testing orders and public health orders에서는 감염병의 확인과 관련하여 당국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내용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요건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 보건당국자에 의한 감염병 환자에 대한 검진과 검사의 명령은 (a) 문서로서, (b)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확인하고, (c) 명령의 목적을 특정하고, (d) 감염이 되었다고 의심되는 질병을 특정해야 하며, (e) 감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f)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범위가 된다는 것과 이에 따른 처벌을 설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Victoria 주의 법률은 개별 감염병 자체의 의학적인 구체적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기보다는 대체적으로는 감염병의 관리의 대상으로서 인간의 행동과 관련된 규정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등록의료인은 법에 의한 정보제공요청에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답해야 하며,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공중보건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의 명령의 즉시성과 효과를 위해 명시되어 있다.²⁹⁾ 등록의료인이 감염병과 관리를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 경우, 이 행위가 선의와 합리적인 행위의 범위 내에서(in good faith and with reasonable care) 이루어졌다면,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조항³⁰⁾이 있다는 점은 여러 차례 감염병 사태를 겪은 우리에게 있어 의료인들³¹⁾의 협조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Division 3에서는 신고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Division 4 HIV and other prescribed diseases는 HIV에 대한 검사와 결과의 통보에 있어, HIV검사를 요구하는 사람이 이와 관련

29) 119 Registered medical practitioner must provide information requested by the Chief Health Officer. 120 Person must comply with a public health order.

30) No action lies against registered health practitioner.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는 관한 법률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에 권리와 의무만이 명시되어 있다.

31)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다양한 소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감염병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행한 의료행위는 고의나 명백한 중과실이 없는 한 소송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개별 의료행위나 의료기관의 관리책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된 규정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료인이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³²⁾ 그 결과의 통보 또한 동일하게 금지된다.³³⁾ Division 5 Orders for tests if incident has occurred에서는 의료의 제공과 관련하여 고의성없이 발생한 감염 사고를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검사명령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Division 6 Reporting requirements에서는 한 회계 연도 내에 이루어진 감염 관련 명령(orders)을 표본 감시의 형태로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Division 7 Immunisation에서는 아동의 예방접종과 접종결과의 확인에 관한 사항, Division 8 Blood and tissue donations에서는 특히 수혈 간에 발생할 수 있는 HIV와 HCV감염 및 기타 감염과 관련된 책임을 다루고 있다. Division 9 Autopsies에서는 사망의 원인이 감염에 의한 것이라든지, 공중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경우의 부검³⁴⁾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끝으로 감염의 예방과 관련하여, 성매매의 관리에 관한 내용이 Division 10 Brothels and escort agencies 제 158조~제165조에 걸쳐 성노동자(sex worker)의 권리 및 성매매 업주의 의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New South Wales 주의 Public Health Act 2010³⁵⁾은 총 9개의 장(Parts)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Part 3. Environmental health(Division 2 Legionella control, Division 4 Control of skin penetration procedures), Part 4. Scheduled medical conditions, Part 5. Other disease control measures and notifications에서 감염병 관리와 관련한 조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제3장의 내용은 Division 2에서는 호주의 역학적 특성에 기인하여 특별히 다루어지는 레지오넬라 감염병의 관리, Division 4에서는 침습적 시술(skin penetration procedure)의 관리와 이 규정의 위반에 대한 벌칙이 규정되어 있다. 제4장에서는 질병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을 별표 1에서 5로 분류하고(Schedule 1 Scheduled medical conditions, Schedule 2 Notifiable diseases, Schedule 3 Vaccine preventable diseases, Schedule 4 (Repealed), Schedule 5 Savings, transition-

32) 131 Information to be given to a person requesting a test for HIV or any other prescribed disease.

33) 132 Information to be provided if results of test are positive.

3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해부명령) ① 질병관리본부장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이 되어 시체를 해부(解剖)하지 아니하고는 감염병 여부의 진단과 사망의 원인규명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시체의 해부를 명할 수 있다.

35) Part 1 Preliminary, Part 2 General public health, Part 3 Environmental health, Part 4 Scheduled medical conditions, Part 5 Other disease control measures and notifications, Part 6 Public health registers, Part 7 Miscellaneous health services, Part 8 Enforcement of Act, Part 9 Administration.

al and other provisions), 별표 1에는 1종부터 5종까지의(Category 1, 2, 3, 4, 5) 범주를 나누어 출생과 선천성 질환과 관계된 1종을 제외한 2~5종까지의 감염병의 관리와 관련된 조항 및 별표 3의 신고 감염병, 별표 4의 예방접종 감염병을 다루고 있다.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짧게 살펴보면, 2~5종의 감염병이 있는 공공장소의 출입자는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사전예방의 조치(reasonable precautions)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 시 자신의 의학적 상황에 대한 인지가 없었다는 것을 법원에서 입증하지 못한 경우 금고형까지의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각 범주의 질환을 가진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registered medical practitioner)에게 부여된 의무조항 및 이러한 규정의 위반을 사유로 이루어진 소송에서 반증하여야 할 내용에 관한 조항이 담겨있다. 일반적으로 환자의 신원정보는 보호되어야 하나, 이러한 신원의 공개는 법원의 결정으로만 가능하다.³⁶⁾ Division 4 Public health orders for Category 4 and 5 conditions에서는 제4종(Avian influenza in human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Tuberculosis, Typhoid) 및 제5종(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infection) 감염의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당국자의 검진(examination)과 격리(detain)의 강제 및 이에 대한 해제(surrender)의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5장 Part 5. Other disease control measures and notifications의 Division 1은 성매개 감염병 (STD: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의료인은 진료와 관련하여 성매개 감염병의 의심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신속히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 감염자의 경우 성행위의 상대 당사자에게 감염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고, 그 위험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³⁷⁾ Division 2와 3은 감염병의 신고에 관한 조항이고, Division 4는 아동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이다. Division 3 Miscellaneous, 제132조 Exclusion of liability of the State and others과 제133조 Exclusion of personal liability (cf 1991 Act, s 77)에서는 이 법에 따라 선의(in good faith)로 이루어진 행위인 경우, 국가 및 주 그리고 개인의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책된다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36) 58 District Court may authorise disclosure of name and address.

37) 성매매업주나 성매매가 일어나고 있는 건물주에게도 성매매의 제공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한 의무와 처벌이 적용된다.

South Australia 주의 South Australian Public Health Act 2011³⁸⁾는 총 13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 2장 Part 2. Objects, principles and interaction with other Acts에는 이 법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9가지 원칙들이 제시되고 있다.³⁹⁾ 이 법에서 제시되고 있는 원칙들은 한국의 감염병 관리 및 공중보건의 관리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전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⁴⁰⁾은 공중보건과 관련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원칙이다. 충분한 과학적 확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중보건에 관한 조치가 유예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단, 비례규정의 원칙(Proportionate regulation principle)에 따라 조치는 위험성에 비례하여야 하고, 최소의 침해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속성의 원칙(Sustainability principle)은 의사결정과정에서 공중보건, 사회경제적, 환경요인들이 사회공동체(community) 안녕의 유지, 발전 및 미래 세대의 이익(interest of future generation)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방의 원칙(Principle of prevention)은 행정상의 결정과 처분(Administrative decisions and actions)과정에서 시행되는 수단이 공중보건의 위험을 예방하거나 회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인구집단중심의 원칙(Population focus principle)은 행정상의 결정과 처분이 인구집단(population)의 건강과 사회공동체의 건강을 보호하고 개선시키는 데 필요한 행위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건강이 당연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참여의 원칙(Participation principle)은 개인과 사회공동체가 자신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장려되어야 하고, 이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의사결정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협조의 원칙(Partnership principle)은 정부와 사회공동체는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데 다양한 층위에서 협조하여야 하고,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이 법의 목적에 일치하는 분명한 공중보건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협조 노력을 발전시키고 강화시키는 방법들을 강구하여야 한다. 평등의 원칙(Equity principle)은 법률에 따른 행정상의 결정과 처분이 합리적으

38) Part 1 Preliminary, Part 2 Objects, principles and interaction with other Acts, Part 3 Administration, Part 4 Public health plans, Part 5 Public health policies, Part 6 General duty, Part 7 General public health offences, Part 8 Prevention of non-communicable conditions, Part 9 Notifiable conditions and contaminants, Part 10 Controlled notifiable conditions, Part 11 Management of significant emergencies, Part 12 Notices and emergency situations, Part 13 Miscellaneous.

39) 6 Precautionary principle, 7 Proportionate regulation principle, 8 Sustainability principle, 9 Principle of prevention, 10 Population focus principle, 11 Participation principle, 12 Partnership principle, 13 Equity principle, 14 Specific principles—Parts 10 and 11.

40) 대한예방의학회 편,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서울, 계축문화사, 2015), 442면. Lawrence O. Gostin, Public Health Law, power, duty, restraint(Berkely and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8), 72면.

로 구현 가능한 한, 과도하거나 불공정하게 개인이나 사회공동체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다양한 인구 집단 간에 존재하는 건강불일치를 고려하고, 이런 불일치를 최소화시키고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제10장과 제11장에 해당되는 사례에 따른 원칙(Specific principles—Parts 10 and 11)은 제10장 감염의 사례에서 감염자와 감염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일반 인구집단의 개인이 갖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원칙들과 제11장 공중보건의 위기상황에서 위기의 선언과 책임과 권한에 관한 내용들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앞서 다루고 있다.

제9장 Part 9. Notifiable conditions and contaminants, Division 1 Notifiable conditions에서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의 감염확산방지의 처분을 제66조 Action to prevent spread of infection에서 다루고 있다. 제10장 Part 10. Controlled notifiable conditions에서는 이 법에 따른 아동에 대한 명령에 있어 친권자(parent or guardian)의 의무를 다루는 조항 및 통제 상황에서의 행정기관의 권한과 내용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제11장 Part 11. Management of significant emergencies에서는 공중보건의 위기상황의 관리에 관한 조항들이 담겨있다.

2. 준주의 감염병 관리 법제

준주도 개별 입법권이 있기 때문에 감염병 관리와 관련된 입법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한다. 가장 최근에 준주로 분리된 저비스 베이 준주(Jervis Bay Territory)의 경우 대개의 법률을 호주 수도 준주(Australian Capital Territory)로부터 준용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살펴본다.

Northern Territory Of Australia의 Notifiable Diseases Act⁴¹⁾는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의 명칭에서 드러나듯 법률의 대상이 신고대상 질병(감염병)으로 제한되어 있어, 앞서 다루었던 개별 주들의 감염병 법률과 차이가 있고, 우리가 통상 이해하고 있는 감염병 관련 법률에 더 가깝다. 제1장 Part I. Preliminary에서는 법률용어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고, 제2장 Part II Notifiable diseases에서는 신고질병에 대한 장관의 지정권한 및 기타

41) Part I. Preliminary, Part II. Notifiable diseases, Part III. Isolation areas, Part IIIA. Liability of Red Cross Society, &c., in respect of transmittable diseases, Part IV. Miscellaneous.

신고에 관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다. 특별히 제12조 Appeal from notice에서는 감염병 환자로 고지받은 사람의 경우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지방법원(Local Court)에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Part III. Isolation areas에서는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의 격리지역 지정과 관련된 조항 및 이의 이탈 그리고 격리지역의 지정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관한 조항이 담겨있다. Part IIIA. Liability of Red Cross Society, &c., in respect of transmittable diseases에서는 수혈과 관련된 감염성질환의 전파에 대한 적십자사와 의료기관, 의료인의 책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Australian Capital Territory의 Public Health Act 1997⁴²⁾는 14개 장으로 구성된 법률로서 제1, 2장 일반조항 이외에 제3장인 Part 3. Public health risk activities and public health risk procedures에서는 감염의 전파(transmission of disease)와 같은 공중보건의 위협요소들에 대한 지정 및 그 내용에 관한 조항들을 다루고 있다. Part 3A. Supply of syringes, Part 3B. Pharmacies에서는 의약에 관한 규정, Part 5. Inspection and analysis에서는 의심이 되는 장소의 확인을 위한 진입에 관한 조항으로, 이 법에 따른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은 신분확인 및 검사 등을 위하여 수색 및 기타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불응하는 경우 권한에 따라 체포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요건이 제시되어 있다.⁴³⁾

V. 감염병 관리체계

2011년 호주 보건상임위원회(Australian Health Protection Principal Committee: AHPPC)⁴⁴⁾는 호주 감염병 네트워크(Communicable Diseases Network Australia: CDNA)⁴⁵⁾에 대하여 개

42) Part 1. Preliminary, Part 2. Statutory offices, Part 3. Public health risk activities and public health risk procedures, Part 3A. Supply of syringes, Part 3B. Pharmacies, Part 4. Insanitary conditions, Part 5. Inspection and analysis, Part 6. Notifiable conditions and public health hazards, Part 6A. Public health alerts, Part 6B. Drinking water and sewage processing, Part 7. Public health emergencies, Part 8. Public health investigations, Part 9. Review and appeals, Part 10. Miscellaneous.

43) Division 5.3 Seizure, 84 Seizure notices.

44) 호주 보건부 산하의 국가위원회. The role of the AHPPC is to coordinate national approach to: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public health emergencies; communicable disease (excluding chronic disease) threats; and environmental threats to public health, including long-term threats.

별 질병 단위의 대비책이 아니라, 당시까지의 감염병 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실태와 필요요소 및 한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의 위협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권고를 포함하는 체계적인 검토를 요청하였다. 그 결과물이 2014년 호주 국가 감염병 관리 체계(National Communicable Disease Control Framework)이다. 2014 호주 국가 감염병 관리 체계의 핵심은 새로운 시스템을 제시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조직의 편성이나 업무 및 책임의 변화 없이, 어떻게 더욱 통합적인 감염병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있다. 이것은 호주가 연방제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국가의 입법적 한계 속에서 감염병이라 공중보건의 위협요소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것인가 하는 논의의 결과물이다. CDNA는 기존의 호주 감염병 관리체계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대개의 시스템이 잘 수행되고 있지만, 21세기를 대비한 재설정이 필요하다.
- 감염병 관리의 거버넌스(governance)가 이질적이고, 개별 질병에 집중되어(disease-specific) 있다.
- 국가차원의 협조체계가 과다하게 위원회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원회가(감염병 관리를 위한) 적절한 의사결정을 위한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다.
- 감염병 관리를 위한 더욱 통합적이고 현대적인 표본감시(surveillance)체계가 필요하다.
- 이러한 감시체계와 감염병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공중보건을 위한 검사실 검사(public health laboratory testing)의 재정이 빈약하다.
- 일관성 있는 국가 질병관리 정책을 위한 시도들이 잘 수용되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원의 배분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inadequately resourced).
- 국가 질병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자원의 분배가 항상 효율적이지는 못하며, 개별 질병의 사회적 부담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not always efficient or according to disease burd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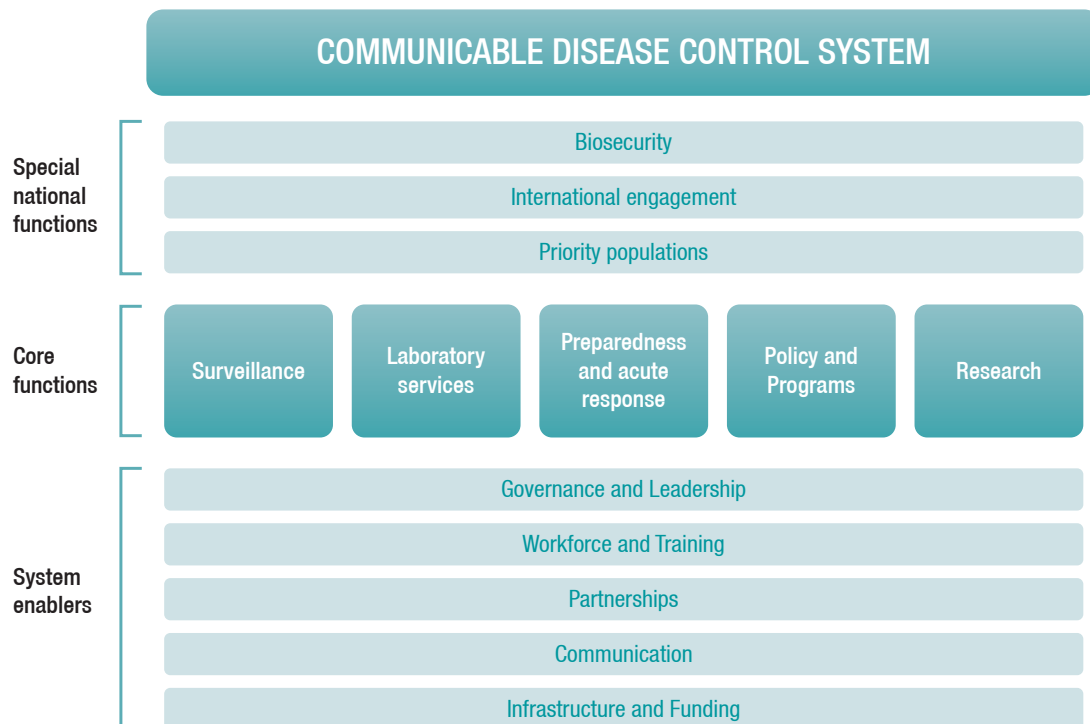
45) AHPPC 내 분과위원회. CDNA meets fortnightly to share and evaluate the latest information and developments in communicable diseases surveillance with a view to providing a high quality surveillance of communicable and notifiable diseases including: HIV/AIDS, sexually transmissible infections, vaccine preventable diseases, arboviruses and zoonotic and enteric diseases.

- 예방프로그램의 목표가 그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표본감시지표(surveillance indicator)와 항상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 공중보건의 연구가 정책결정을 위해 요구되는 질문에 더 부합해야 한다.
- 국가적 공중보건 위기(multijurisdictional outbreak)의 관리를 위해서는 더욱 협조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 감염병 관리의 전 기능을 담당할 훈련된 인적자원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없다.

이상과 같은 분석이 한국의 감염병 관리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숙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CDNA는 향후 지향해야 할 호주의 감염병 관리체계의 핵심

〈그림 1〉 감염병 관리체계



〈그림 2〉 관리체계 구성요소의 개별목표



구조를 국가전담기능(specific national function), 핵심기능(core function), 시스템작동요소(system enablers)로 나누어 <그림 1>과 같이 제시하고, <그림 2>에서는 그 개별 구성요소가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명하고 있다.⁴⁶⁾

CDNA가 제시한 호주 국가 감염관리 체계를 통한 실체적 관리의 대상은 다음의 8가지이다.⁴⁷⁾

46) National Communicable Disease Control Framework, 8면. <그림 1> A CD control system of functions and enablers, 13면; <그림 2> Objectives and outcomes for national CD control 참조.

47) 호주는 검역법을 제외하고 각 주 및 준주가 법률상 법정 감염병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합하여 호주 연방 정부가 관리하고자 감염관리의 대상을 특정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관련 각 법률에 법정 감염병들이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는 관리체계의 실체적 대상을 다루는 것으로 대한예방의학회에서는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예방접종대상감염병, 사람간 접촉에 의한 감염병, 성접촉매개감염병, 절지동물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만성감염질환, 의료관련감염병, 해외여행 감염병 등으로 분류하여 놓고 있다. 대한예방의학회 편,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서울, 계축문화사, 2015), 247~342면 참고.

- 항생제 내성(Antimicrobial resistance)
- 신종, 인수공통, 매개성 감염병(Emerging, zoonotic and vector-borne diseases)
- 음식물 및 장관 감염병(Foodborne and enteric infections)
- 의료관련감염병(Healthcare associated infections)
- 인플루엔자 및 기타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Influenza and other respiratory viruses)
- 성매개 및 혈행성 바이러스 감염병(Sexually transmissible and bloodborne virus infections)
- 예방접종대상 감염병(Vaccine-preventable diseases)
- 기타 국가가 지정하는 감염병(Miscellaneous infectious diseases of national significance)

VI. 맺는 말

감염병 관리와 관련하여 호주의 법률을 살펴본다는 것은 대단히 방대한 일이다. 이는 우선 호주 법체계와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감염병의 관리라는 영역이 의학 및 임상의료, 예방의학 및 공중보건학, 행정법 및 형사법적인 이해와 인간의 행동 및 의사소통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감염병의 유형에 따른 의학적 접근과 이러한 감염병과 관련된 인간의 행동양식, 이를 관리하는 실무 그리고 규범하는 법률은 결국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접근은 자신이 속한 사회를 대상으로 하거나 다른 사회를 대상으로 하거나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호주 감염병 관리와 관련하여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접근보다는 한국의 감염병 관리와 관련하여 호주의 감염관리 법률 및 체계가 드러내 보여주는 차이와 시사점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며 다음과 같다.

호주는 연방의 형태로 구성된 국가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입법권이 각 주 및 준주에 있으므로, 호주정부의 감염병 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주안점은 호주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조와 공조를 유기적으로 유지하여 공중보건의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있다. 따라서 입법에서도 이러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와 다르게 감염병을 질병중심의 개별법(결핵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등)으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Act) 체계 내에서 다룬다.⁴⁸⁾ 한국도 체계적 관점에서 개별 감염병 관리 법률을 하나의 법률체계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이유로 법률 조항보다는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감염병 관리의 실제적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근거위에서 감염병 관리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주간의(interstate) 문화적, 법률적 차이에 구애받지 않고 일관성 있는 국가차원의 감염병 관리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게 해준다.

개별 주의 법률에 따라 그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나, 감염병 환자의 관리에 있어 수반되는 격리(quarantine and isolation)나 구류(detain) 및 기타 법률에 따른 행정적 인신구속과 강제 절차는 사법절차에 준하여 수행하고 있다.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하더라도 사전 사후 법원의 승인을 요하고, 절차에 따른 이의 신청과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법률과 선의에 따른 행위일 경우, 의료인이나 관련 당사자인 환자의 행위가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률상 명기하고 있다.

감염병 중 특히 만성 감염병에 대한 관리에 대해 다양한 노력을 기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HBV, HCV, HPV, HIV와 같은 만성 감염병이 갖는 역학적 특성상 그 자체로 지속적인 국가의 부담이 될 개연성과 암 발병의 원인으로서 감염성 질병이 갖는 특성에 기인한다. 또한 성매개성 감염병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데, 다른 감염성 질환에 비해 지속적으로 호주 내 발생률과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⁴⁸⁾

감염병의 관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여 사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건강의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이러니하게도 의료나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이다. 개별 감염병 환자를 잘 치료하기 위해서는 환자와 의료인 간의 상호존중의 의사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가와 개인 사회와 개인, 개인과 개인 간의 합리적 의사소통에 기초하지 않는 감염병의 관리는 감염병이 아닌 감염병 환자를 사회의 위험요소로서 간주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사람을 법률적 관리의 대상으로만 보게 함으로써 기본권이나 인권의 침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감염병은 항상 새로이 출현하고 있으며 과학과 의학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기존의 감염병 또한 인간과 사회의 행동양식이 변화하는 가운데 함께 사회적 진화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호주정부가 감염병 관리와 관련하여 다양한 층위의 법률적 행정적 의사소통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48) 일본도 2007년 감염병관리 법률 내에 결핵예방법을 포함시키는 개정을 시행했다.

49) Australian Health 2012에 보고된 클라미디아 및 임균 감염신고건수가 각각 80,793건과 12,116건 으로, 2011년 1,219건인 호주의 결핵 신고건수와 비교해보면 그 관리의 중요도를 이해할 수 있다.

참고문헌

대한예방의학회 편,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계축문화사, 2015.

박인경·김소운·이세경, “통합적 검역체계 구축을 위한 법정책적 측면에서의 호주검역법연구”, 한국의료법학회지 제19권 제1호, 2011.

이세경, 결핵환자의 인권향상을 위한 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 Australian Health 2012, 2014.
- National Communicable Disease Control Framework.
- Discussion Paper: National Communicable Disease Control Framework.
- HIV, viral hepatitis and sexually transmissible infections in Australia Annual Surveillance Report 2014.

Gostin, Lawrence O., Public Health Law, power, duty, restrain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8.

<http://www.health.gov.au/internet/main/publishing.nsf/content/ohp-quarantine.htm>.

프랑스의 국민투표 및 주민투표 법제

정 관 선 ▶ 동덕여자대학교 강사, 법학박사

I. 들어가며

II. 국민투표

1. 법률 국민투표
2.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

III. 주민투표

1. 결 정
2. 대 상
3. 절차 및 한계
4. 효 력

IV. 시사점 및 결론

‘글로벌(Glocal)’은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의 합성어로서, 교통, 통신수단 등의 발달로 생활권의 글로벌화되어 경제문제를 비롯한 환경문제, 평화문제등에서는 국가간 상호의존이 높아지면서도 국가를 대신하는 단위로서의 지역의 역할이 여전히 강조됨을 의미합니다. 이에 최신외국법제정보는 글로벌과 로컬의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고자 합니다.